

## 2011년 제3회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 국제사법재판소

#### 사이버 공격과 무력행사 사건 (Arios / Beroma)

1. Arios공화국은 국토 면적 약 3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3천만 명의 국가로서 1944년 3월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였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1990년 이래 군사독재정권이 계속되어 1인당 국민소득은 4,300 달러에 불과하다. Arios는 약 30만 명의 병력으로 된 군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군의 무기체계는 현대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2. Beroma공화국은 Arios의 인접국으로서 국토면적 약 8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9천만 명의 국가로서 1944년 3월에 Arios와 함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였다. 농업과 더불어 각종 중공업과 첨단기술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한 선진국이며 민주화된 정치체제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달하고, 인터넷 광통신망을 비롯하여 고도화된 통신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공항, 철도, 항만 등의 교통기반시설도 매우 발달되어 있다. 현대적인 첨단 무기로 무장한 약 5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예산은 Arios의 10배에 달한다.
3. Arios와 Beroma는 인종과 종교가 다르며 역사적으로는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양국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1945년 1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에는 1990년에 이르기까지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4. Arios와 Beroma는 양국 국경지대에 있는 면적 약 4천 평방킬로미터의 Pitus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1946년 이래 분쟁을 겪어 왔다. Pitus지역은 1944년 Beroma의 독립 이래 Beroma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이다.

Arios와 Beroma가 독립하기 전에, 식민지 본국이 식민통치의 경계를 정한 포고령에서 일시적으로 Pitus지역을 Arios 총독의 관할 하에 두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Arios는 1946년부터 Pitus지역이 자국령에 속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1946년 이래 Arios는 매년 Pitus지역이 자국령임을 주장하고 Beroma의 Pitus지역 점유를 항의하는 외교각서를 Beroma에 보내오고 있었지만, 2009년 3월에 이르기까지 Pitus의 영유권에 관한 양국의 분쟁은 심각한 양상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5. 2010년 3월부터 Arios 내에서 민주화의 요구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Arios의 군사독재정권은 외부적 위기감을 고조시켜 상황을 타개하고자 Pitus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Beroma와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Arios는 국내의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Pitus지역이 자국 영토라고 하는 선전을 강화하면서 Beroma에 대하여 Pitus지역을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6. 2010년 4월 3일, Arios는 Beroma에 대하여 5월 3일까지 Pitus지역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Pitus지역에 대한 Arios의 영유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내용의 외교각서를 보내고, 이후 연일 Pitus에 가까운 국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7. Arios의 군사훈련에 대응하여 Beroma도 2009년 4월 5일부터 Arios와 접경한 Pitus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Beroma의 군사훈련은 첨단 공군기와 기계화부대 등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며, 훈련에 참가한 병력의 수도 Pitus부근의 국경지역에서 훈련하는 Arios군의 배가 넘었다.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4월 8일에 양국의 군사훈련 자제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양국이 즉각적으로 교섭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였다.

9. Beroma의 군사훈련이 예상외의 대규모로 진행되는 상황에 위협을 느낀 Arios는 4월 9일에 Beroma에 대하여 상호 군사훈련의 중지와 Pitus지역 국경으로부터 4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모든 군대의 후방 철수를 제안하고, 같은 날부터 Arios 군의 군사훈련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4월 10일에

Beroma는 군사훈련은 순수하게 방위적인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Arios를 공격할 의도가 없으므로 예정된 군사훈련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Arios에게 전달하였다.

10. 4월 11일, Arios는 Beroma가 계속해서 침략적인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발표 이후에도 Beroma의 군사훈련이 계속되자 Arios는 4월 13일에 Pitus의 Arios 접경지역에 주둔해 있던 Beroma의 보병대대를 포격하였다. 이 포격으로 인하여 Beroma는 장교 2명을 포함하여 병사 20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11. Arios의 포격이 진행되는 동안 Beroma는 4대의 전투포격기로 구성된 비행편대를 출격시켜 Beroma를 포격한 Arios군 포병부대를 폭격하였다. 이 폭격으로 인하여 Arios의 포병부대는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하는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Beroma의 비행편대는 또한 자신들을 요격하기 위하여 발진한 Arios의 전투기 5대를 격추시켰다. Arios의 전투기가 요격을 위하여 발진하자 Beroma 공군은 추가로 10대의 전투포격기를 발진시켜 Arios의 전투기가 발진한 공군기지를 폭격하였다. 이 폭격으로 인하여 Arios 공군기지의 격납고 수 개 동이 파괴되었으며 격납고 내의 전투기 20여대도 기동이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다. 또 다수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12. 2010년 4월 14일, Beroma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Arios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Beroma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위권을 행사하였으며, Arios의 포병부대와 공군기지를 폭격하고, Arios의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보고하였다.

13. 4월 14일, Arios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Beroma공화국의 무력 위협으로부터 Arios공화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Arios공화국이 취한 정당한 자위적 군사행동에 대하여 Beroma공화국은 무력침략으로 대응하였다. Beroma공화국은 Arios공화국을 무력으로 공격한 것이 자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Arios공화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Beroma공화국은 Arios공화국을 무력으로 침략하였으며 자신의 침략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Arios공화국은 자국의 신성한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

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Beroma공화국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14. 2010년 5월 10일, 동시에 이루어진 분산서버서거부(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공격에 의하여 Beroma의 주요한 정부 웹사이트 30곳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Beroma 정부는 즉각 조사팀을 구성하여 공격의 경로와 명령자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2010년 5월 17일, Beroma정부는 조사팀의 다음과 같은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격에 동원된 공격명령서버는 Arios 내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Arios 정부가 이번의 사이버 공격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공격에 관한 모든 사실을 규명할 것을 Arios에 제안한다.”

Beroma의 발표와 제안에 대하여 Arios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15. 2010년 6월 1일에 Beroma의 증권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증권거래와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약 1억 달러로 추정되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20일만에 걸친 Beroma 정부의 사고경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고는 해킹에 의하여 전산시스템의 운영체제가 삭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치밀한 해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소 전산시스템을 공격하는데 쓰인 IP 중의 하나가 2010년 5월 10일에 발생한 DDos공격에 사용된 Arios내 IP와 동일한 것이었다. Beroma 정부는 6월 24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Beroma 증권거래소 전산시스템 마비 사건의 조사 결과, 시스템을 공격하는데 동원된 IP 주소가 지난 5월 10일의 DDos공격에 사용된 IP 주소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Beroma 정부로서는 두 번에 걸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Arios 정부가 있다는 의혹을 불식할 수 없다. Beroma는 거듭 국제적인 조사단을 지난 5월 10일의 DDos공격과 이번 증권거래소 전산시스템 마비 사건을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Beroma의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모든 사이버 공격을 Beroma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16. 2010년 7월 20일, Arios의 군사정보총국에 근무하는 Suta대령이 몰래 국경을 넘어 Beroma에 망명을 요청하였다. Suta는 군사정보총국에서 사이버 공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망명시 다수의 기밀 서류를 지참하고 있었다. 7월 21일, Beroma 정부는 기밀서류의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Beroma에 대한 2010년 5월 10일의 DDos공격과 2010년 6월 1일의 증권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공격은 Arios군이 10여년에 걸쳐 양성해온 사이버 공격부대의 공격 능력을 시험해 본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평소 Beroma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정보와 일치되는 내용이었다. 또 Arios가 8월 초에 Beroma 국방부의 지휘통신관리 컴퓨터 시스템, 철도교통통제 시스템, 항만통제시스템, 항공관제시스템과 Beroma내 전력회사의 전력송출 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하고, Beroma의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Pitus지역을 점령한다는 계획 하에 2개 사단을 동원 준비 중이라는 정보도 확인하였다. 기밀 서류에는 Arios의 사이버 공격부대의 소재지, 공격에 사용되는 민간정보보안업체 서버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17. 7월 23일 오후 1시에 갑자기 Beroma 국방부의 지휘통신관리 컴퓨터 시스템, 철도교통통제시스템, 항만통제시스템, 항공관제시스템과 Beroma내 전력회사의 전력송출제어시스템, 다수의 Beroma 민간 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 Beroma 정부의 다수의 웹사이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이 개시되었다. 공격을 받은 다수의 대상들 중에서 일부는 강화된 보안 조치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다수의 Beroma 민간 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과 Beroma 정부의 다수의 웹사이트는 작동이 정지되었다. 그리고 철도교통통제시스템과 전력송출제어시스템의 보안이 뚫려 철도교통이 마비되고, Beroma의 중요 도시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였다.

18. Beroma는 Suta의 망명 사실을 감지한 Arios가 당초의 공격 계획을 앞당겨 7월 23일에 사이버 공격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지 5시간만인 7월 23일 오후 6시에 30여대의 전투폭격기를 동원하여 Arios의 사이버 공격부대의 소재지와 공격에 사용되는 민간정보보안업체 서버의 소재지로 생각되는 건물을 폭격하였다. 동시에 Pitus지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부대로 Beroma가 파악하고 있던 Arios의 제6사

단과 제8사단을 폭격하였다.

19. 7월 24일, Beroma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Suta의 망명에 의하여 확인된 Arios의 사이버 공격계획과 7월 23일에 실제로 발생한 Beroma에 대한 다수의 사이버 공격의 사실,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Beroma가 Arios의 건물과 부대를 폭격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20. 7월 26일에 Arios와 Beroma 간의 사태를 토의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토의에는 Arios와 Beroma가 초청되었다. Arios는 회의에서, Beroma가 국제연합헌장을 위반하여 Arios를 침략하였으며 Arios가 입은 피해에 대한 Beroma가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Beroma가 어떠한 추가적인 공격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여 줄 것과 Beroma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Beroma는 회의에서, Beroma에 대한 Arios의 모든 사이버 공격의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감독 아래 Arios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국제적인 사실조사단이 구성되고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Arios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Arios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1. 7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①Arios와 Beroma는 모든 무력에 의한 위협과 무력행사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 ②Arios는 Beroma에 대한 어떠한 사이버 공격도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 ③양국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갈 것, ④양국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집중적인 교섭을 시작할 것을 결의하였다.

22.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Arios와 Beroma는 2010년 7월 30일부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의 과정에서 Arios는 Beroma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2010년 5월 10일의 DDos공격, 2010년 6월 1일에 Beroma의 증권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공격, 그리고 2010년 7월 23일 오후 1시의 동시 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이 모두 Arios의 군사정보총국이 행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Arios는, 자신의 그러한 사이버 공격은 Beroma가 행한 2010년 4월 11일의 Arios 공격에 대응하여 Arios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3. 2010년 4월 13일의 Arios의 Beroma군 포격 행위, 같은 날의 Beroma군의 Arios 포병부대 폭격 및 Arios 공군기지 폭격 행위, 2010년 5월 10일의 DDos공격, 2010년 6월 1일에 Beroma의 증권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공격, 2010년 7월 23일 오후 1시의 동시 다발적인 사이버 공격, 같은 날의 Beroma의 Arios의 사이버 공격부대 건물과 민간정보보안업체 서버의 소재지 건물에 대한 폭격, Arios의 제6사단과 제8사단 폭격 등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국제책임을 둘러싸고 Arios와 Beroma는 2011년 5월에 이르기까지 교섭을 벌였지만 문제의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24. Arios와 Beroma는 1948년 이래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다.

25. 2011년 6월 15일, Arios와 Beroma 양국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특별협정(Compromis)을 체결하였다. 특별협정에서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최종적이고 구속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26. Arios공화국은 재판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청한다:

- (a) 2010년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계속된 Beroma의 군사훈련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선언;
- (b) 2010년 4월 13일의 Beroma 공군의 Arios 포병부대 폭격과 Arios 공군기지 폭격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선언;
- (c) 2010년 7월 23일의 Beroma 공군의 Arios 군대와 민간 건물에 대한 폭격이 국제법위반이라고 하는 선언;
- (d) 2010년 4월 13일과 2010년 7월 23일의 Beroma 공군의 폭격에 대하여 Beroma에게 금전배상을 포함한 국가책임을 있다는 사실의 확인.

27. Beroma공화국은 재판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청한다:

- (a) 2010년 4월 13일 Beroma군에 대한 Arios군의 포격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선언;
- (b) Beroma에 대한 2010년 5월 10일의 Arios의 DDos공격과 2010년 6월 1일에 Beroma의 증권거래소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Arios의 사이버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선언;

- (c) 2010년 7월 23일 Beroma에 대한 Arios의 동시 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선언;
- (d) 2010년 4월 13일의 Beroma 공군의 Arios 포병부대 폭격과 Arios 공군 기지 폭격의 국제법상 적법성의 확인;
- (e) 2010년 7월 23일의 Beroma 공군의 Arios 군대와 민간 건물에 대한 폭격의 국제법상 적법성의 확인;
- (f) Beroma에 대한 2010년 5월 10일의 Arios의 DDos공격과 2010년 6월 1일에 Beroma의 증권거래소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Arios의 사이버 공격, 그리고 2010년 7월 23일 Beroma에 대한 Arios의 동시 다발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Arios에게 금전배상을 포함한 국가책임이 있다는 사실의 확인.